

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(배림가옥)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5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 공공한옥 중 사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역사가옥, 배림가옥의 민간위탁 협약만료에 따라, 배림가옥의 전문적, 효율적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
- 나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3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(배림가옥) 운영지원
- 나. 위탁 개요
- 대상시설 : 배림가옥(등록문화재 제 85호)
 - 소재지 : 종로구 계동길 89(북촌 지역)
 - 시설규모 : 대지 257.9㎡, 연면적 128.93㎡
 - 위탁기간 : 3년(2024.1.1. ~ 2026.12.31.)
 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 - 소요예산(안) : 285백만원 ※ '23년 예산: 270백만원

다. 주요 위탁내용

- 역사인물(배림, 송석하) 기반한 전시 조성·운영
- 인문학, 서화전문,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시민주도(신진 작가 등) 문화예술 기획 및 대관전시 운영
- 지역 내 공공한옥 간 연계 협력사업 고도화
- 한옥 주거문화(K-리빙) 체험 프로그램 운영
- 시민홍보 및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사무국 구성·운영 등

라. 추진근거

- 「문화재보호법」 제34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34조
- 「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2개소(홍건익가옥, 배림가옥)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」 (한옥정책과-5367, '23.6.8.)

마. 민간위탁 지속 운영 필요성

- 배림가옥은 북촌 화가 배림, 민속학자 송석하가 거주했던 가옥으로 관련 콘텐츠 활용 및 북촌 도시형한옥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·예술·건축의 테마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전문적 운영 위해 민간위탁 추진, 전통에 기반한 재창조를 논의하고 북촌의 문화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옴
- 그동안 구축해 놓은 프로그램과 공간 노하우를 잘 연결하고 시민의 문화적 창의성 실현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올해 발표한 <서울한옥 4.0> 실행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, 네트워킹 등 서울한옥 정책 확산거점으로 활용도 증대 등 프로그램 고도화 위해서는 전문단체의 지속적인 민간위탁 필요함

바. 기대효과

- 가옥의 시설관리와 정책적 사무는 시에서 유지하고, 가옥의 전시기획·조성 및 대시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·운영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분리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능률성·효율성 확보
-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가옥의 특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종합적 활용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서울 공공한옥의 경쟁력·지속성 확보

3. 추진일정

가. 추진현황

- 「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추진계획」 (한옥조성과-10481, '16.9.28.)
- 역사가옥 2개소(홍건익가옥, 배림가옥) 사무 민간위탁 운영('17.5.1.~)
- 「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분리운영 추진계획」 (한옥건축자산과-2092, '20. 2.20.)
- 역사가옥 2개소(홍건익가옥, 배림가옥) 개별 민간위탁 운영('21.1.1.~)
- 「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」 (한옥정책과-5367, '23.6.8.)
-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'23.7.5. 조직담당관)

위탁사무명	유 형		위탁기간	심의결과
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배림가옥 운영	재위탁	사무형	3년	적정

나. 향후계획

- 제320회 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의결('23.8.28. ~ 9.15.)
- 배림가옥 수탁기관 공모, 적격자 심의위원회('23.9월 ~ 10월)
-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, 위탁사무 인수인계('23.10월 ~ 12월)
- 배림가옥 수탁기관 운영('24.1월 ~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문화재 보호법」 제34조

제34조(관리단체에 의한 관리)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34조

제3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③ 시장은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서울 공공 건축자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예산 편성(예정)

다. 합 의 : 조직담당관 심의('23. 7. 5.)

-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: 결과(적정)

※ 작성자 :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유미옥(☎ 2133-5582)